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30.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4. 21. 선고 2019가단10895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경주시 B 임야 85,884㎡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 31. 접수 제52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와 C 사이에 경주시 B 임야 85,884㎡에 관하여 2019.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84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D의 배우자이고, 경주시 B 임야 85,8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D와 2014. 7. 31.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5. 7. 30.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7. 26.로 연장되고,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이 일부 감축되었다.

다. C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보증인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일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대상 대출을 받았다. D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9. 6. 27.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원금연체로 2019. 7. 27.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0. 2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326,094,001원(= 원금 320,000,000원 + 이자 6,094,001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D는 그 외 대지급금 1,913,830원, 위약금 1,830,570원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바. 한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2019. 1.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일인 2019. 1. 30.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19. 7. 27. D의 원금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2019. 10. 22.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손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1. 30.경 시가는 94,472,400원이고, C는 위 구상금채무 외에 2019. 1. 30.을 기준으로 E 주식회사에 27,037,39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C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9. 1. 30.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C가 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 즉 무자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일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 또는 D가 피고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C가 그 재산으로 당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음에도 그의 재산을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참조).

4) 따라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9년 1월경 D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을 뿐, 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인지, C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2019. 1. 30.을 전후하여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F 및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C와 D는 함안군 H에서 고물업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지역에서 J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C 또는 D와 업무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는 F의 소개로 알게 된 C 또는 D와 실제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금전거래에 관한 차용증 등을 비롯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2억 원에 가까운 큰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가 힘들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증서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30. C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C는 위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는 2019. 1. 30. 141,965,000원만을 송금받았는바 위 매매예약에서 정한 금액이 수수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K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9. 4. 3.과 같은 달 24일 D의 계좌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 돈이 이 사건 매매예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알기도 어렵다.

(마) 이와 같은 상황에서 D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9. 6. 27.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약 6개월 만인 2019. 7. 27.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10. 20. L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도 C의 채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3) 한편 피고는 C가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다른 채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해행위 성립 이후의 문제일 뿐이다.

2)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가 사업자금의 일부를 융통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C가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C 측에 지급한 돈 중에 일부가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설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강은, 판사 조유리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와 같이 사해행위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고,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로서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주위적·예비적이라는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이라 할 것어서 주위적·예비적이라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한다.